오산시의회 공고 제2025-54호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예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교육자치 확대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교육비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내용 명시

○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10월 22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4

· 전자메일 : jw3788@korea.kr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으로,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에”를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오산시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지원기한·대상사업·사업비 정산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외의 부분 중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을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교육지원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도교육감과”를 “교육감과”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교육감 및 교육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유아교육법」에 따라 오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 ---------- ---------- ---------- ---- 교육경비 보조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하여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는 오산시에 소재하는「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경비”는 학교교육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 보조사업”(이하 “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육협력사업”이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오산시가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경기도교

	육청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비특별회계”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별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범위) 시장은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지원기한·대상사업·사업비 정산 등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	제4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①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예외로 한다.	② ---------- 교육지원사업 ----------. ---------- ---------- ---------- ---------- ----------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부서장, 교육지원업무 총괄담당부서장, 시와 대응·협력하는 교육경비 사업을 추진하는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이상 직위의 공무원 2명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 ---------- 교육장------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대응투자 가능 사업을 결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 ---------- ---------- ---------- ---------- ---------- 교육감과---------- ---------- 교육장----------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교육감 및 교육장 ---------- ---------- ----------.